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9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8.

발 의 자:김정재·하영제·김용판

구자근 · 김태흠 · 김영식

양금희 · 송석준 · 정진석

김기현 · 송언석 · 한무경

서범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 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등에 대해 2020년까지 한시적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농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농어민과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,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.

특히 계속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, 농어업,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협, 새마을금고 등에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·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116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제2항제3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	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	②
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	
다음 각 호에 따른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	3
제11호, 제19호는 <u>2021년 12</u>	<u>2023년 12월</u>
<u>월 31일</u>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	<u> 31일</u>
서에만 적용	
4.・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